

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,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바로 알기

격리의무(7일)가 격리권고(5일)로 변경되더라도
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

★ 지원 대상은?

- ①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,
- ②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(입원자 제외)하고, ③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

*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.(공동격리 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)

* 입원자는 입·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

★ 격리참여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은?

격리참여

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(5일)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

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은?

- ① **온라인**(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확인),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② **전화** 또는 ③ **대리방문**하여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·유급휴가비 신청 가능

★ 격리참여자 등록 후, 격리방법은?

격리장소 및 방법

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,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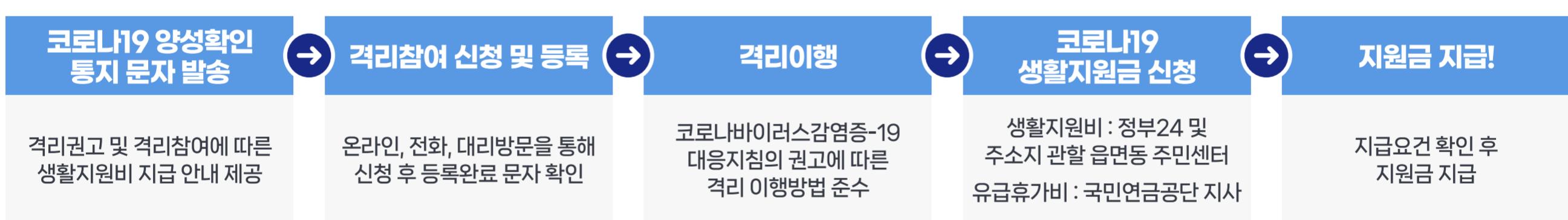
격리 중 외출 시

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, ① 병·의원 방문, ② 의약품 구매·수령, ③ 임종, ④ 장례, ⑤ 시험, ⑥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, 외출 시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를 착용하고, 가급적 도보·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.

☞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. 이후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가 있나요?

격리이행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**지원금 전액 환수조치** 됩니다.

달라진 생활지원비 지급절차



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안내

| | 생활지원비 | 유급휴가비 |
|---|---|---|
| 지원대상 |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격리자 (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) |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|
| 지원제외 |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|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|
| 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대응지침(지자체용)<3의2.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> 확인 | | |
| 지원금액 |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- 2인 이상인 경우 50%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(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) |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,000원 지원(최대 5일) |
| 신청기간 |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| |
| 신청방법 | (온라인) 정부24(www.gov.kr) (오프라인)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|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|